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78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박성준 • 박홍근 • 박홍배

조계원 • 노종면 • 허종식

정성호 · 김성회 · 강유정

문진석 • 윤종군 • 민병덕

박희승 · 염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 적·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제76 조제1항제4호 신설,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76조제1항제 4호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 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u>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u>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
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
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u>가</u>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	
사산 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	
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	
<u>-</u>	
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u>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u> -	
② (현행과 같음)	